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

* 변경 전 법령 기준: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사회복지전공 학과생이 시행일 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현행 사회복지법은 학과기준이 아니고 교과목 기준임)

➢ 다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시행일 이후에 수강한다면 실습시간은 기존 법령에 따라 120시간 이상 이수하되,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함

(적용 예시 다음페이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구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2019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120시간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12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시간

➢ '수강하고 있는'은 교육기관의 해당교과목 수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됨

적용예시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함(2019년도 사전실습 불인정)

적용예시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한 실습기관에서 기관실습 가능 (교과목 개설기간이 2019년 12월 10일 ~ 2020년 2월 10일 경우 변경 전 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교과목 및 추가되는 교과목

□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

➢ 이수연도(시행일 이전, 시행일 이후)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사업론 →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복지론

□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

➢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적용예시1)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개론'을 이수할 경우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인정

적용예시2) 시행일 이후 자격증 신청을 할 경우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이수한 경우 선택과목 중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적용예시3) 시행일 이전 신규 교과목(7개 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더라도 변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법령 적용
(변경된 법령 기준: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등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 기관실습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①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지도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보수교육 적용기준) 2020년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2019년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이수교육 이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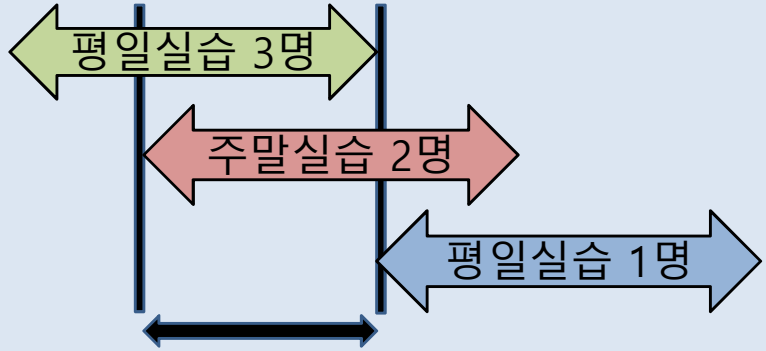
2019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유예기간(6월30일까지) 동안 개설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지도를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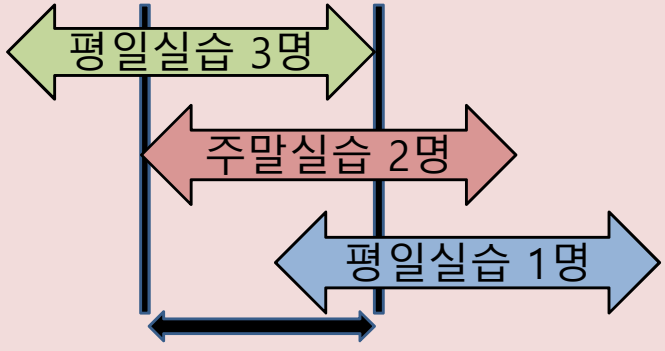
□ **기관실습의 운영**

- **실습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예시1) 인정 가능



예시2) 인정 불가능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등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일부로 별도의 수업 개설이 필요하지 않음(교육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별도 개설한 경우 인정가능)
- 실시기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 할 수 없음)**
- 실습세미나 교수 기준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